

□ 국토교통부 (25건)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1 ~ 7	개발제한 구역	GB 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 (국토부)	<p>기존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시설 도입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이 제한*되어 있어, 각종 장비·기계 등의 설치가 곤란하여 스마트팜 활성화에 장애</p> <p>* 가로·세로·높이 각각 40cm 이하 규모만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p> <p>안화 적정 수준의 콘크리트 타설이 수반되는 스마트 농업 시설을 GB 내 허가대상 시설로 허용하는 방안 검토</p> <p>* 현재 농림부와 시설기준 마련 협의중</p>	(농림부) 관련법령 제정 / (국토부) 개발제한 구역법 시행령 개정										
		수목성장기간을 고려한 GB 환경평가등급 지표 개선 (국토부)	<p>기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GB 해제 추진 시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여 환경평가 1·2등급지는 해제지역에서 제척하고 있으나, 천연·자연림의 수령이 늘어남에 따라 1~2등급지가 지속 확산</p> <p>* 수령 10년 이하 천연림으로 구성된 3등급지가 10년의 세월이 지나 2등급지로 승격</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등급</th> <th>등급기준 (현행)</th> </tr> </thead> <tbody> <tr> <td>1</td> <td>• 천연기념물, 화귀식물서식지, 수령 41년 이상 천연림</td> </tr> <tr> <td>2</td> <td>• 수령 21년~40년의 천연림, 수령 41년 이상의 인공림</td> </tr> <tr> <td>3</td> <td>• 수령 20년 이하의 천연림, 수령 21년~40년의 인공림</td> </tr> <tr> <td>4</td> <td>• 수령 20년 이하의 인공림</td> </tr> <tr> <td>5</td> <td>• 무입목지, 임간나지, 제지, 농경지 및 기타지역</td> </tr> </tbody> </table> <p>안화 연구용역('25)을 통해 수목성장기간을 고려한 환경평가등급 조정안 마련(식물상 평가지표 등급기준 조정)</p>	등급	등급기준 (현행)	1	• 천연기념물, 화귀식물서식지, 수령 41년 이상 천연림	2	• 수령 21년~40년의 천연림, 수령 41년 이상의 인공림	3	• 수령 20년 이하의 천연림, 수령 21년~40년의 인공림	4	• 수령 20년 이하의 인공림	5
등급	등급기준 (현행)													
1	• 천연기념물, 화귀식물서식지, 수령 41년 이상 천연림													
2	• 수령 21년~40년의 천연림, 수령 41년 이상의 인공림													
3	• 수령 20년 이하의 천연림, 수령 21년~40년의 인공림													
4	• 수령 20년 이하의 인공림													
5	• 무입목지, 임간나지, 제지, 농경지 및 기타지역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1 ~ 7	개발제한 구역	국방·방위사업 관련 GB 관리계획의 검토·승인의 우선 심의 (국토부)	<p>기존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장에서 국방·방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검토 및 승인 절차에 과다한 시간 소요(평균 3년이상)</p> <p>완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권자(시·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국방·군사시설 등 특별히 주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처리되도록 우선 심의</p>	행정안내 (공문시행)
		비수도권의 국가지역전략 사업은 GB 해제 가능총량에서 제외 (국토부)	<p>기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권역별 해제가능 총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p> <p>완화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은 해제가능 총량과 별도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허용</p>	광역도시 계획수립 지침 개정 (조치완료)
		비수도권의 국가지역전략 사업은 환경평가 1·2등급지도 GB 해제 가능 (국토부)	<p>기존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불가</p> <p>완화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은 해제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신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조건으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 허용</p>	광역도시 계획수립 지침, 개발제한 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 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 (조치완료)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1 ~ 7	개발제한 구역	전기차 충전소 설치 보전부담금 면제 (국토부)	<p>기존 주유소·LPG충전소와 달리 전기차 충전소는 GB 보전 부담금 부과</p> <p>완화 전기차 충전소를 'GB주민 편의·생업시설'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GB 장기 거주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보전부담금을 면제</p> <p>* 법인의 신뢰보호를 위해 개정 후 일정기간(2년) 내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 조치를 규정</p>	개발제한 구역법 시행령 개정
		개발제한구역 내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 등 허용 (국토부)	<p>기존 인천은 도심 군부대 이전(3.1km²), 아라뱃길 개발(3.4km²) 등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요하나, 총량 부족</p> <p>완화 인천 내 개발제한구역 신규 지정 시, 그 면적만큼 총량 추가 확보 가능</p>	국토부 심의
8 ~ 10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노인복지시설 설치 허용 (국토부)	<p>기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3층 이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공작물만 설치 허용</p> <p>완화 초고령 사회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허용 규모(3층 이하) 수준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에 한정해 건축을 추가로 허용</p>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복개된 유수시설에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허용 (국토부)	<p>기존 유수시설은 방재시설로서의 기능과 재해예방을 위해 복개한 후에도 설치 시설*을 엄격히 제한</p> <p>* 배수펌프장, 공공청사,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사회복지 체육시설, 평생학습관, 공공임대주택(내 및 지방공사 포함)</p> <p>완화 '공영차고지'는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수단이므로 공공성이 인정되고, 수반 건축물도 많지 않으므로 유수시설 복개 후 설치도록 허용</p>	도시계획 시설규칙 개정
		도시계획도로 예정지 해제로 인한 피해 방지 (국토부)	<p>기존 도시·군계획시설 지정 후 10년간 미집행한 경우 자동 실효되어, 도시계획도로(예정지) 해제에 따라 그 주변 필지들이 맹지가 되는 등의 피해 발생</p> <p>완화 장기미집행 시설의 자동실효를 대비하여 사전 준비를 의무화하고, 준비를 위한 기준 등을 제시하기 위해 '14년부터 운영 중인 가이드라인 내에 지자체에서 예방 방안을 마련토록 관련 조항 명확화</p>	도시·군계획 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11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지역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지역을 고도지구로 대체 (국토부)	기존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및 주민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쳐 건축물의 높이 지정 공고 폐지 규제 목적 및 건축물 높이에 대한 지자체의 제한 등 고도지구와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도 지구로 대체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12	장애물 제한표면	국제기준 개정에 부합하는 장애물 제한표면구역의 높이 제한 개선 (국토부)	기존 공항 주변지역에서 건축물 등의 높이 제한 완화 국제기준 개정에 맞추어 국내기준 개정 * 국제기준 개정일정(잠정) : '23(개정초안) → '26(개정, 잠정) → '28(시행, 잠정) ** ICAO 개정안('23.6) 주요 내용 : ① 일률적인 제한표면 방식 → 금지·평가표면으로 이원화, ② 표면 침투에 대한 유연성을 적용하기 위한 안전성 검토 핵심절차 마련	공항시설법 개정
13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시혁신구역으로 대체 (국토부)	기존 도시지역에서 지역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용도지역, 건축법 규정 등을 완화하는 지역 폐지 동일한 기능을 갖는 도시혁신구역으로 통합('24.8월)	국토계획법 개정 (조치완료)
14	접도구역	지역 여건 맞춤형 접도구역 지정 기준 마련 및 구역 조정 (국토부)	기존 접도구역을 일률적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등의 신축·개축·증축 행위 등 제한 * 지정폭 : (고속국도) 10m, (일반국도) 5m, (지방도) 5m 완화 도로 여건(교통량, 통행속도, 인접 도시, 민원 등)을 고려하여 접도구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불필요하게 지정된 구역(폐도 등)은 해제 * '접도구역 규제개선방안 연구' 용역 ('23.12.14.~'24.10.9.)	접도구역 규제개선 방안 마련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15	일반물류 단지	부동산 신탁업자로의 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해 위원회 심의 면제 (국토부)	<p>기존 사업시행자는 물류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부동산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시행 또한, 부동산신탁업자가 종전 시행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 중이나 사업시행자 변경은 물류단지개발계획의 중요사항으로 규정되어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p> <p>안화 법에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은 사업시행자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신탁업자로의 사업시행자 변경은 물류 시설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제외</p>	물류시설법 시행령 개정
16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	사정 변경에 따른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해제 허용 (국토부)	<p>기존 공급촉진지구 지정해제 사유를 “사업준공” 및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2년 내 지구계획 승인 미신청시”로 한정</p> <p>안화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급촉진지구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허용</p>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17	새만금 사업지역	고군산군도 일대 새만금사업지역 축소 (국토부)	<p>기존 새만금사업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등 행위시 새만금개발청장의 허가 필요</p> <p>안화 새만금사업지역 중 개인 사유지가 다수 편입된 고군산군도지구(3.3km²) 일대의 재산권 제한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지역 축소</p>	새만금 사업지역 변경 고시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18	농림지역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 (국토부)	<p>기존 농림지역에서는 농어가주택의 건축은 허가하는 반면, 단독주택의 건축은 금지</p> <p>*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어가주택과 단독주택의 건축을 모두 허용</p> <p>완화 농림지역에서 농어가주택 외 단독주택의 입지 허용</p>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19	노외주차장 설치제한 지역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폐지 (국토부)	<p>기존 지자체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조례로 노외주차장의 설치 제한 가능</p> <p>폐지 도입 후(95) 약 30년간 지정 실적이 없어 폐지</p>	주차장법 개정
20	생산관리 지역	생산관리지역 내 주차장 건축 허용 (국토부)	<p>기존 생산관리지역에 공장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지가 있지만 일반 주차장 설치가 불허되어 주차 불편</p> <p>완화 공장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주차장의 입지 허용</p>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21	자연녹지 지역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전에 입지한 업체에 한해, 한시적으로 공장 건폐율 완화 (국토부)	<p>기존 입지 당시 기타관리지역이었던 공장부지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되어 건축물 및 기계설비의 증설 불가</p> <p>* (화성시 조례) 보전·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p> <p>완화 한시적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 적용(시행령 93조의3)을 통해 자연녹지지역 지정 전 관리지역에 준공된 공장에 한해 건폐율 완화*</p> <p>* 20% → 40%</p>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조치완료)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22	재정비축진지구	재정비축진지구 지정 면적 요건 완화 및 지원 확대 (국토부)	기존 재정비축진지구는 최소 면적 50만㎡ 이상 지역을 지정하며,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를 제한하는 반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건축규제완화 특례 등을 지원 완화 재정비축진지구 지정요건 완화(최소면적 50만㎡ → 10만㎡) 및 용적률 1.2배 확대,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최대 50% → 70%) 등	도시재정비법 개정 (조치완료)
23	복합구역	복합구역 내 R&D 시설 입지 허용 (국토부)	기존 산업집적을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 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하는 복합용지에서는 산업시설 면적이 복합용지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규정 완화 R&D시설은 산업시설로 해석, 산업시설 면적으로 산정하여 복합구역내 입지가능함을 지자체에 안내 * (산업입지법 제2조제2호, 제7호의2) 지식산업(연구개발업 포함) 관련 시설은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	유권해석 및 행정안내 (조치완료)
24	소규모 재개발사업 시행예정 구역	소규모 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 폐지 (국토부)	기존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예정구역의 지정을 시장·군수등에게 제안하고, 공람·지방의회등 의견을 들어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지정 고시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같이 시행예정구역 지정없이 조합설립인가 등 절차 이행이 가능하도록 예정구역 폐지	소규모주택 정비법 개정 (조치완료)
25	국가산업단지	국가산단 개발·실시계획 권한 등을 시·도지사로 위임 (국토부)	기존 '90년 이전 지정된 국가산단 18개에 대해서만 개발·실시계획 권한 등을 시·도지사로 위임 이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국가산단에 대해서 개발·실시계획 변경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 확대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 (조치완료)

□ 농림축산식품부 (26건)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 사항
1	농어촌 관광휴양 단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규모 상한 폐지 (농식품부)	<p>기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규모기준은 1만5천m²이상 100만m² 미만</p> <p>완화 농촌경제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규모상한(100만m²) 삭제</p> <p>*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의 경우에도 하한(50만m²이상)만 규정하고 있음</p>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2 ~ 4	기타 (농지)	인구감소지역 농지전용 허가권한의 지방 이양 (농식품부)	<p>기존 시·도지사의 농지전용 허가권한은 0.3km² 미만으로 제한</p> <p>* 강원특별자치도는 농지특례에 既 반영되어 0.4km²으로 확대</p> <p>완화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 내 특례지구를 지정을 통해 농지구제 완화 및 지자체 권한 확대 추진</p> <p>* 인구가 감소하는 특정 지구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농지 전용 권한 확대</p>	농지법 시행령 개정
		작물(농지) 위 영농형 태양광 설치 허용 (농식품부)	<p>기존 태양광 시설은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조성된 토지에서만 설치가능</p> <p>완화 작물(농지)위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허용 등은 영농형태양광 관련 법령 정비와 병행하여 개선</p>	관련 법령 제·개정
		주말농장 내 주차장 허용 (농식품부)	<p>기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주말농장에 주차장 시설 부재로 불편 초래</p> <p>완화 주차장을 농지이용행위(부속시설)로 허용</p> <p>* 농촌 체류형쉼터 부속시설로 주차장 1면 인정</p>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 사항
5 ~ 6	농업생산 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	사업계획 등 승인 권한 지자체장에게 위임 (농식품부)	기존 농식품부 장관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사업 사업계획 승인 이양 농업기반시설법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신청하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승인토록 권한을 위임 * 국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신청 하는 경우는 현행대로 농식품부 장관이 승인	농업기반 시설법 시행령 개정
		농업생산기반 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에 대한 해제 규정 신설 (농식품부)	기존 사업 준공에 따른 활용구역 해제 규정 부재 완화 사업 준공에 따른 사업지구 해제 규정이 없어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사업중에 적용받는 건축물 건축, 토질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국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어 해당 규정 개선	농업기반 시설법 개정
7 ~ 17	농업진흥 지역 (진흥구역, 보호구역)	자연취락지구와 중복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식품부)	기존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 중복 지정 경우 존재 완화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의 중복지정 현황을 조사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업진흥 지역 해제 추진
		농촌체험·휴양 프로그램 운영시 일반인 대상 특산물 판매 허용 (농식품부)	기존 농업진흥지역 내 특산물 판매는 금지하나, 도농 교류법에 의해 농촌체험·휴양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농산물 판매 허용 완화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지정시 프로그램 참여자 뿐만 아니라 마을주민, 방문객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농수산물 등 특산물을 판매하는 시설 설치가 가능	유권해석 및 행정안내 (조치완료)
		관리규정에 맞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식품부)	기존 충남 당진의 19만m ² 는 농업진흥지역 관리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타용도 이용제한 완화 소관 지자체장이 관련 구역 해제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여 제출	지자체 대상 농지법 이행 안내 (조치완료)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 사항
7 ~ 17	농업진흥 지역 (진흥구역, 보호구역)	경지 정리되지 않는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식품부)	<p>기존 농업진흥지역의 단지화 지정에 따라 경지 정리되지 않은 농지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개발행위 등을 제한</p> <p>완화 농업진흥지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소규모(3ha이하)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24.4) 통보</p>	소규모농업 진흥지역 정비 추진
		보전가치 낮은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추진 (농식품부)	<p>기존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정비(변경·해제) 불가</p> <p>*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기준에 따른 재정비는 '19년 이후 중단</p> <p>완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시도에 통보(24.4.26.), 관련 조치계획을 적극 활용하여 정비</p>	소규모농업 진흥지역 정비추진
		농업진흥지역 내 도로 및 철도 부속시설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 (농식품부)	<p>기존 도로·철도에 대한 농지전용 협의시 본선외 구간은 (도로휴게소, 철도역사 부지 등) 별도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약 1년 소요) 절차가 필요하여 국가반 시설 사업에 치질</p> <p>완화 도로 부속물, 철도시설 등 농업진흥지역내 행위제한 완화가 필요한 공공시설을 조사하여 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에 포함</p>	농지법 시행령 개정
		농지전용허가 권한 조정 (농식품부)	<p>기존 농지전용허가 권한 : 시장·군수 : 3천㎡ 미만 시·도지사 : 3천㎡~3만㎡</p> <p>완화 농지전용허가 권한 조정 : 시장·군수 : 5천㎡ 미만 시·도지사 : 5천㎡~3만㎡</p> <p>* 다만, 타당성 검토와, 시·도와 시·군 권한 조정 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 필요</p>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 사항
7 ~ 17	농업진흥 지역 (진흥구역, 보호구역)	산업적 생산활동 목적의 농지 취득 허용 (농식품부)	기존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당해에는 농지 취득 불가 완화 산업적 생산활동 목적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후 농지 취득 허용	유권해석 및 행정안내 (조치완료)
		소규모 농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규제 해제 (농식품부)	기존 농업진흥지역 내 기계화 영농 효율성 등이 낮은 소규모 농지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어 토지 이용에 제한 완화 소규모(3ha 이하) 농업진흥지역의 지자체 개발 수요를 감안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효과 정주여건 개선 및 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소규모농업 진흥지역 정비 추진
		수직농장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확대 추진 (농식품부)	기존 농지법령상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최대 8년으로 제한 완화 농업진흥지역에 ICT와 결합한 컨테이너형 수직농장 등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 확산 위한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확대(8→16년)	농지법 시행령 개정 (조치완료)
		일정지역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입지 규제 완화 (농식품부)	기존 건물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불가 완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또는 스마트농업육성법에 따른 스마트육성지구 수직농장을 설치시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설치 가능	농지법 시행령 개정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 사항
18	간척지활용 사업구역	간척지활용 사업구역 해제규정 신설 (농식품부)	<p>기존 사업 준공시 간척지활용 사업지구 해제 규정 부재</p> <p>완화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사업 중에 적용받는 건축물 건축, 토질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국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어 해제 규정 신설</p>	간척지법 개정
19	농어촌 정비구역	농어촌 정비구역을 농촌 빈집정비 특별법으로 통합 (농식품부)	<p>기존 농어촌의 노후·불량 주택을 계획적·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p> <p>*「농어촌마을리모델링법」 제6조</p> <p>통합 향후 체계적인 빈집 정비를 위해 검토 중인 「농촌 빈집 정비 특별법(가칭)」에 관련기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농어촌마을 리모델링법」상 정비구역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p>	농촌 빈집 정비 특별법(가칭) 제정
20 ~ 21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 지역	<p>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해제 규정 신설 (농식품부)</p> <p>국가의 재해예방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대상지역 확대 (농식품부)</p>	<p>기존 사업 취소 시 사업지역의 해제 규정 부재</p> <p>완화 사업 취소에 따른 사업지역의 해제 규정이 없어 사업 중에 적용받는 건축물 건축, 토질 형질변경 등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국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어 해제 규정 신설</p> <p>기존 국가는 50ha이상 사업지역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p> <p>완화 기본계획 대상을 확대(50→30ha이상)</p>	<p>농어촌 정비법 개정</p> <p>농어촌 정비법 개정</p>
22 ~ 23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한계농지 정비지구에 대한 해제 규정 신설 (농식품부)	<p>기존 사업계획 취소 시 정비지구의 해제 규정 불명확</p> <p>완화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는 사업계획 취소에 따른 사업지역의 해제 규정이 불명확하여 건축물 건축, 토질 형질변경 제한 등 국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어 해제 규정 신설</p>	농어촌 정비법 개정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 사항																				
22 ~ 23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한계농지 정비지구 지정 신청 처리기한 신설 (농식품부)	기존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서식 내 처리 기한 부재 완회 서식 내 처리기한을 설정하여 해당 민원 발생을 줄이고, 지자체 행정절차의 효율화 추진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24	마을정비 구역	마을정비구역 계획 수립 총괄계획자 자격요건 완화 (농식품부)	기존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또는 마을정비계획 수립 순과정을 총괄하기 위한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 완회 석사학위를 가지고 현장에서 장시간(예시 : 5년 이상 등) 종사한 인력도 전문인력으로 인정하는 유사 입법례와 같이 개선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개정																				
25	초지	초지 조성 허가기간 단축 (농식품부)	기존 다른 용도의 토지에 초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처리기간 35일) 완회 농지(전용 최대 30일), 산지(지구지역 지정 30일) 등과 형평성을 고려, 허가기간 단축(35일 → 30일)	초지법 시행규칙 개정																				
26	공장 등 설립제한 지역	공장 등 설립제한지역 범위 현실화 (농식품부)	기존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 거리 2km(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5km(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 이내 지역에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제한 * 현행 범위 기준은 연구결과('09)에 따라 수질오염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유달시간과 오염농도 저감률 등을 고려하여 2km 및 5km로 설정 <table border="1" data-bbox="643 1579 1267 1839"> <thead> <tr> <th>입자규제 기준거리</th> <th>유달 시간</th> <th>오염농도 저감률</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6.0km</td> <td>9시간</td> <td>50%</td> <td>· 규제 강화</td> </tr> <tr> <td>5.0km</td> <td>8시간</td> <td>40%</td> <td>· 기존 규제 유지</td> </tr> <tr> <td>2.0km</td> <td>3시간</td> <td>20%</td> <td>· 수질사고 대비 최소 거리</td> </tr> <tr> <td>1.0km</td> <td>1.5시간</td> <td>10%</td> <td>· 수질사고 대비 유출차단시설 필요</td> </tr> </tbody> </table> 완회 '09년 이후 여건변화(공장 수질오염 관리 시스템 및 수질오염 사고 대응 체계 등)를 반영한 제한거리 변경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4.7~'25.7, 농어촌공사)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9조 개정	입자규제 기준거리	유달 시간	오염농도 저감률	비 고	6.0km	9시간	50%	· 규제 강화	5.0km	8시간	40%	· 기존 규제 유지	2.0km	3시간	20%	· 수질사고 대비 최소 거리	1.0km	1.5시간	10%	· 수질사고 대비 유출차단시설 필요	연구용역 추진 및 개선안 마련
입자규제 기준거리	유달 시간	오염농도 저감률	비 고																					
6.0km	9시간	50%	· 규제 강화																					
5.0km	8시간	40%	· 기존 규제 유지																					
2.0km	3시간	20%	· 수질사고 대비 최소 거리																					
1.0km	1.5시간	10%	· 수질사고 대비 유출차단시설 필요																					

□ 환경부 (22건)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 사항
1 ~ 3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의 음식점 허용 (환경부)	기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은 음식점 불가 안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교육원, 군사시설(용도폐지 된 경우) 등 공공건축물은 조건 충족*시 음식점 허용 * 일반·휴게음식점 운영계획, 환경관리계획 수립 후 지방 환경청장 협의를 거쳐 허용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 (조치완료)
		상수원 보호구역 내 입지가능시설 종류 확대 (환경부)	기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도로, 철도,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교육원 등의 입지만 허용 안화 청소년수련원, 전기설비, 모노레일 등 입지 허용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 (조치완료)
		상수원 보호구역 내 농경행위를 위한 벌채 허용 (환경부)	기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수원림 조성목적 외 벌채 금지 안화 농경행위를 위한 토지(전·답) 내 벌채 허용	수도법 시행령 개정 (조치완료)
4 ~ 5	습지구변 관리지역, 습지개선 지역	'습지구변관리 지역'과 '습지개선지역' 통합 (환경부)	기존 '습지구변관리지역'은 '습지보호지역'의 주변지역을 지정하고, '습지개선지역'은 '습지보호지역' 중 훼손 또는 개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지정 통합 운영상 유사한 '습지구변관리지역'과 '습지개선지역'을 '습지관리지역(가칭)'으로 통합, 규제 지구를 효율적 운영 * 습지 특성상 구획의 확정이 어렵고, '습지구변관리지역'과 '습지개선지역'의 운영상 유사점이 많아 통합	습지보전법 개정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6	야생생물 특별보호 구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 (환경부)	<p>기존 환경부 소관 지구 중 가장 규제강도가 높아 제도운영에 제약이 많음(05년 진주 진양호(수달) 이래 지정 없음)</p> <p>완화 생태탐방로, 교육시설 등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접근성 개선, 생태 교육홍보, 지역 수용성 제고 등 도모</p>	야생생물 보호 관리법 개정
7 ~ 8	수변구역	수변구역 중 하수처리구역과 중복 구역 해제 (환경부)	<p>기존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는 하수처리구역도 수변구역 해제 불가</p> <p>완화 수계법상 해제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 개선 의견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오염 부하량 변동 등을 고려하여 조정 추진</p> <p>*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14.7월 이전 편입), 도시지역 등 중첩 시</p> <p>- 추진대상 : ▲(용인 포곡읍) 군사시설보호구역 중첩에 따른 해제(3.7km², 기추진('24.11.15)), ▲(영동군-옥천군) 금강수계 수변구역 해제(0.143km², 기추진('24.4.30)) 등</p>	수변구역 지정 해제 추진 (조치완료)
		수변구역 내 폐업한 업체도 영업 재개 허용 (환경부)	<p>기존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영업한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은 계속 영업이 가능하나, 폐업 이후에는 영업 재개 불가</p> <p>완화 폐업 전과 동일 업종, 동일 영업자, 기존 건축물 면적 이내인 경우 영업재개를 허용</p>	4대강 수계법 개정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 사항
9 ~ 10	국립공원	국립공원과 보전관리지역 중복 지정에 따른 규제 완화 (환경부)	<p>기존 국립공원 내 자연공원법과 국토계획법을 모두 적용받는 곳*은 과도한 중복규제** 적용</p> <p>*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그 외 지역은 자연공원법만 적용하도록 기 정비)</p> <p>** (예) 자연공원법에 따라 무등산 국립공원 내 방문자 센터(음식점) 설치를 추진중이나 국토계획법상 규제로 제한</p> <p>안화 중복지역 전수조사(환경부) 후 해당 지자체 대상으로 용도지역 정비(도시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 안내(국토부)</p> <p>* 시·군에서 계획 수립 후, 시·도지사가 결정</p>	전수조사 추진 후 지자체 안내
		공원구역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시 규제 완화 (환경부)	<p>기존 국립공원 내 자연공원법과 개발제한구역법을 모두 적용받는 곳은 두 법률의 제정 목적이 비슷함에도 이중규제 문제 발생</p> <p>* (예)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시설 → 자연공원 내 설치 가능, GB는 설치근거 없어 설치 불가</p> <p>안화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 내에서 자연학습장, 멸종위기종 복원시설 등의 설치 허용</p>	(국토부) 개발제한 구역법 시행령 개정
11	공원자연 환경지구	'공원자연 환경지구'→ '공원자연 보존지구'로 상향 조정시 기존 주민의 임산물 채취권 보장 (환경부)	<p>기존 지구 상향 조정 시 임산물 채취 불허*</p> <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리산 내 3곳)에서만 고로쇠 수액 채취를 허용</p> <p>안화 지구 상향 조정 시에도 기존 채취·거주민은 임산물 채취 행위 지속 허용</p>	자원공원법 개정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 사항
12 ~ 13	생태·경관 보전지역 (핵심, 완충, 전이)	생태·경관보전 지역 내 유해야생생물 포획시 이중규제 해소 (환경부)	기존 유해야생생물 포획시 ①야생생물법에 따른 포획 허가(지자체)와 ②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행위허가(환경청) 둘다 필요 완화 ①야생생물법에 따른 포획 허가(지자체)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완화	자연환경 보전법 개정
		생태·경관보전 지역 내 홍수예방 위한 하천공사 등 허가 (환경부)	기존 야생 동·식물 포획, 건축물 신·증축 및 토지 형질 변경, 하천공사 등 수위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제한 완화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 허가	자연환경 보전법 개정
14	지하수 보전구역	지하수 보전구역별 유형을 세분화해 행위제한 완화 (환경부)	기존 지하수 수질, 수량의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행위제한 * 지하수 보호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지정시 규제 도입(건축물 설치 제한 등)으로 인해 보전구역 설정에 대한 지역 반발이 커서 지정이 제한(현재 당진, 무안 2개소 뿐) 완화 강한 규제만 있는 현행 제도를 비규제-적정규제-적극 규제(현행)로 세분화하여 지하수를 탄력적으로 관리	지하수법 개정
15	토양보전 대책지역	대책지역 지정 시 지역주민 의견 청취 의무화 (환경부)	기존 잔류성오염물질이 함께 오염된 경우의 정화계획안에 대한 지역주민 청취는 의무이나, 대책지역 지정 시 지역주민 청취는 의무사항이 아님 완화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근거 규정 도입	토양환경 보전법 개정 (조치완료)
16	친수구역	친수구역 지정 해제 기한 완화 (환경부)	기존 친수구역 지정 후 3년 이내 개발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정 취소 완화 구역 고시 후 실시계획 승인 기한(미승인 시 해제)을 조정(3년→2+1년)하여 사업기간 단축 촉진 및 불필요한 재산권 제한 완화	친수구역법 개정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17	하천구역	하천구역 내 뉘시 금지·제한구역 합리화 (환경부)	기존 뉘시금지·제한구역의 설정근거만 존재 완화 상황변화에 따른 변경·해제근거도 마련하여 제도 운영 유연화	하천법 개정 (조치완료)
18 ~ 19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지자체가 운영하는 친환경 선박운행 허가 (환경부)	기존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생태학습 교육용 선박 운영을 허용하였으나,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운영 금지 * (특대지역)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친환경 선박 운항만을 허용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조사, 생태학습, 재난대비 목적 선박 운항 허용 완화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태학습 목적의 친환경(전기·수소·태양) 선박 운영 허용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
		수질보전특별 대책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 및 공업 입지 지원 (환경부)	기존 특별대책지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상수원 수질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장(산업단지)도 불허 완화 특별대책지역Ⅱ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내 공장들이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일괄적으로 상수원 수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사항 (22) 관련 재안내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20	환경정비 구역	팔당호, 대청호 주변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입지규제 합리화 (환경부)	기존 방류수 수질에 따라 총 호수의 5~20% 범위내 100m ² 이하의 음식점 허용 안화 방류수 수질 법정기준 50% 이내 지역은 음식점 면적을 150m ² 로 완화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 (조치완료)
21	건축 등 허가제한 지역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을 토지이용규제에서 제외 (환경부)	기존 허가제한지역은 오염부하량 초과시 일시적으로 제한 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나, 토지이용규제 상 지역·지구로 포함하여 관리 폐지 허가제한지역은 일시적 제재 조치사항이므로, 토지 이용규제의 지역지구 개념과는 맞지 않아 토지이용 규제에서 삭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제외
22	폐수배출 시설 설치제한 지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을 토지이용규제에서 제외 (환경부)	기존 설치제한지역은 오염부하량 초과시 일시적으로 제한 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나, 토지이용규제 상 지역·지구로 포함하여 관리 폐지 설치제한지역은 일시적 제재 조치사항이므로, 토지 이용규제의 지역지구 개념과는 맞지 않아 토지이용 규제에서 삭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제외

□ 산림청 (19건)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 사항
1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지정해제 추진 (산림청)	<p>기존 여건변화로 지정목적 상실하는 등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유지 필요성이 낮은 제한지역 존재</p> <p>완화 사유재산권 제한 완화를 위해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 (334.33km²) 중 사유지(44.76km²)에 위치하며 지정목적 상실한 제한지역 35.80km² 해제</p>	제한지역 지정해제 고시 (조치완료)
2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 (산림청)	<p>기존 완충지역에서 건축면적 합계 500m² 미만 농림수산물 창고는 허용하나, 판매시설은 제한</p> <p>완화 완충지역 내 건축면적 합계 500m² 미만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p>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협의기준 (예규) 개정
3	(국·공립) 수목원조성 예정지	국·공립 수목원 조성 예정지 지정기간 8년→4년 축소 (산림청)	<p>기존 국·공립 수목원 조성을 위해 최대 8년간 예정지 지정 가능(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3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p> <p>완화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최대 8년→4년으로 축소</p> <p>*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하고, 1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하도록 개선</p>	수목원 정원법 개정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 사항
4 ~ 8	보전산지 (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	보전산지 형질변경 시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산지일시사용 제도 도입 (산림청)	기존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의 형질변경은 산지 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로만 가능 완화 감시탑, 보호.차단울타리 등 임업경영을 위한 행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산지일시사용제도 도입	산지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소규모 보전산지에 대한 지정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산림청)	기존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 지정해제는 산림청장의 권한 이양 지방시대 산지이용 활용도 제고를 위해 3ha 미만의 보전산지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산지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보전산지 내 간이농림 어업시설의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대폭 연장 (산림청)	기존 산지 내 설치되는 산림경영관리사 등의 산지일시사용 기간이 3년 이내로서 잦은 연장신청 등 임업인 민원 다발 완화 다발민원 규제완화를 위해 산림경영계획 수립 주기 10년에 맞게 간이농림어업시설*의 산지일시 사용 기간을 현행 3년→10년 이내로 연장 추진 * △산림경영관리사 △농막 △대피소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산지전용 시 국가첨단산업 연구시설의 입목축적 예외적용 (산림청)	기존 산지전용 시 입목축적(입목의 구성) 허가기준을 초과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시설 구축 불가 완화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시설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ha당 입목축적 적용 예외 규정을 신규 마련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보전산지 내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설치 확대 (산림청)	기존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설치조건이 3m 이내로 제한 완화 작업로 중 너비(3~5m) 확보가 필요한 경우 임도 설치기준에 맞게 시설 계획하여 임도로 산지일시 사용 신고 허용	유권해석 및 행정안내 (조치완료)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 사항
9 ~ 10	백두대간 핵심구역	백두대간 핵심구역 내 쉼터 및 전망시설 설치 허용 (산림청)	[기존]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내 쉼터 및 전망 시설 설치 불가 [완화] 핵심구역 내 쉼터 및 전망시설 설치 허용	백두대간법 개정 (발의완료)
		백두대간 핵심구역 내 궤도시설 설치제한 완화 (산림청)	[기존] 백두대간 핵심구역 내 궤도 및 삭도시설 설치 제한을 국가지자체 또는 납입자본금 50% 이상 정부가 출자한 기업체로 제한 [완화] 민간사업자도 허용하되 「강원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백두대간 마루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에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추진	강원특별법 (제42조) 제정시 적극협조
11	백두대간 완충구역	백두대간 완충구역 내 숲속야영장 설치 허용 (산림청)	[기존] 백두대간 완충구역 내에는 6개의 산림공익시설*만 설치 가능 * △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치유의 숲 △생태숲 [완화] 완충구역 내 숲속야영장 설치 추가 허용	백두대간법 개정 (발의완료)
12	사방지	사방지 지정해제 경과기간 5년→1년 단축 (산림청)	[기존] 사방사업 후 5년이 경과하여야 직권으로 사방지 지정해제 가능 [완화] 사방지 지정에 따른 산주의 재산권 침해 방지 및 사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방사업 후 1년이 경과하면 직권으로 사방지 지정해제 허용	사방사업법 시행령 개정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 사항
13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 허용 (산림청)	기존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에 '치유의 숲 조성 불가' 안회 산림의 공익목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치유의 숲' 허용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14	채종림 등	채종림·수형목 소유자 요청시 지정해제 허용 (산림청)	기존 산림사업용 우량종자 확보 등을 위해 국·공·사유림 내 채종림·수형목을 지정 관리(사유림, 사유 수목의 경우 산림 소유자 신청 시 지정)하고 있으나, 산림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지정해제기준은 없음 안회 산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산림소유자 요청시 채종림·수형목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산림자원법 개정
15	자연휴양림	자연휴양림 지정·해제·원상복구 명령권한 위임 (산림청)	기존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권자는 시도지사이나, 자연휴양림 구역의 지정·해제 권한 및 조성계획을 취소할 시 산림의 원상복구 명령권한은 산림청장에 있음 이영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이 '23년부터 지방이양됨에 따라 공사립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및 원상복구 명령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산림휴양법 개정 (발의완료)
16	공익용 산지	공익용 산지 내 허용 행위는 다른 법률의 행위제한 미적용 (산림청)	기존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공익용 산지 관련 법률에서 허용되는 행위도 산지일시사용 신고 시 설치지역 제한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존재 안회 이중규제를 통한 과도한 재산권 제한 및 다발민원 해소를 위해 「산지관리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의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경우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시 설치지역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선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 사항
17	토석채취 제한지역	토석채취 제한지역에서 지자체장 동의시 채석단지 지정 허용 (산림청)	<p>기존 안정적 토석공급을 위해 채석단지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나, 소유자 산지에서도 토석채취 제한지역 규제로 채석단지 확대가 어려움</p> <p>안화 토석채취 제한지역에서도 지자체장 동의시 채석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토석채취 제한지역 행위제한 완화</p>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18	시험림	시험림 지정권자 축소 (산림청)	<p>기존 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시도지사,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산림품종센터장이 시험림을 지정</p> <p>안화 시험연구기능이 없는 지방산림청장의 지정권한 삭제</p>	산림자원법 개정 *전부개정 추진중
19	임업용 산지	임업용 산지 내 관광특구 숙박시설 허용 (산림청)	<p>기존 보전산지 행위제한으로 숙박시설, 부대시설 등 설치 불가</p> <p>안화 관광특구 내 관광단지·관광지의 숙박 및 부대시설 등 설치에 관해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에서는 허용되는 행위로 해석</p>	유권해석 및 행정안내 (조치완료)

□ 해양수산부 (11건)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 사항
1	어항구역	어항구역 내 민간투자 가능시설 확대 (해수부)	<p>기존 어항시설 파괴·구조 개조 또는 위치변경, 폐선 및 장애물 방치, 어항구역 매립 및 굴착, 폐기물 무단 투기 등 제한</p> <p>완화 「연안어촌 발전대책」 발표(24.5)에 따라 민간 투자를 위한 쇼핑센터, 음식점 등의 수익시설을 어항시설로 포함</p>	어촌어항법 개정
2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변경 권한 지방이양 추진 (해수부)	<p>기존 해수부 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p> <p>이양 해수부 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p> <p>(육지 전체·공유수면 1km² 미만에 대해 시·도지사가 해수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p> <p>*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안 발의(24.9.2)</p>	국토계획법 개정
3	시·도 해양보호 구역 (생물, 생태계, 경관)	시·도지사 지정 해양보호구역을 장관이 지정하는 해양보호구역으로 통합 (해수부)	<p>기존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해양보호구역,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 해양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p> <p>통합 해양보호구역으로 통합하고, 지정권자에 해수부 장관 이외에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p>	해양 생태계법 개정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 사항
4	절대보전 무인도서	절대보전→ 이용가능 무인도서로 관리유형 완화 (해수부)	<p>기존 무인도서는 현재 육역을 기준으로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개발가능 무인도서로 구분하여 행위 및 출입 제한</p> <p>완화 절대보전으로 지정된 무인도서(해역)에 대하여 지자체 요구 및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이용가능 무인도서로 관리유형 완화(절대보전→이용가능)</p> <p>* 현재 2개 무인도의 관리유형 변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중 (전남 강진군 대오도, 소오도)</p> <p>- 장기적으로 무인도서 주변해역 특성 및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전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변경 지침 마련</p>	<p>① 관리유형 변경</p> <p>②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변경 기준 지침(안) 마련</p>
5	이용가능 무인도서	이용가능→ 개발가능 무인도서로 관리유형 완화 (해수부)	<p>기존 무인도서는 현재 육역을 기준으로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개발가능 무인도서로 구분하여 행위 및 출입 제한</p> <p>완화 이용가능으로 지정된 무인도서(육역 및 해역)에 대하여 소유자 요구 및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개발가능 무인도서로 관리유형 완화(이용가능→개발가능)</p> <p>* 현재 2개 무인도의 관리유형 변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중 (전남 여수시 능초도, 조도)</p> <p>- 장기적으로 무인도서 주변해역 특성 및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전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변경 지침 마련</p>	<p>① 관리유형 변경</p> <p>②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변경 기준 지침(안) 마련</p>
6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해제조항 신설 (해수부)	<p>기존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지정조항은 있으나, 예정지역 해제조항은 부재</p> <p>완화 명확한 법령 정비를 위해 해제조항 신설</p>	신항만 건설법 개정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 사항
7	어촌특화 발전계획 구역	어촌특화발전 계획구역을 (가칭)어촌형 기회발전특구로 개편 (해수부)	<p>기존 어촌특화발전법 제9조에 따라 구역을 지정하며, 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인공구조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합병, 물건 적채, 죽목 벌채 및 식재 행위 시 지자체 허가 필요</p> <p>* 제도도입(13년) 이후 10년간 지정실적이 없음</p> <p>통합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을 (가칭)어촌형 기회발전특구*로 통합</p> <p>* 대규모 산업단지 중심으로 하는 산업부의 기회발전특구와 차별화된 제도로 개별 어촌 특성을 반영해 주요 거점어항 및 배후지역에 조성</p>	어촌특화 발전법 개정
8	항만구역	항만구역 내 항만 입지시설 확대 및 화물 분류체계 개선 (해수부)	<p>기존 항만법 제28조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에 출입 통제를 하고 있음</p> <p>안회 항만물류분야 규제혁신방안 발표(23.5) 및 국가 기후변화정책 변화(저탄소→탄소중립)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항만시설에 명문화 추진 중이고, 항만구역(항만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화물 분류체계 개선중*이며, 전용 항만시설의 임대 범위를 확대하여 항만시설 이용자의 편의 확대</p> <p>* 화물분류체계 개선방안 마련(23.12)을 토대로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25.12)에 반영할 예정</p> <p>**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저장·유통 관련 시설 등 탄소중립 항만시설 「항만법」 개정안 발의(24.10.30)</p>	항만법 개정
9	해양산업 클러스터	해양산업 클러스터 내 입주가능산업 확대 (해수부)	<p>기존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제34조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기관만 입주 가능</p> <p>안회 최근 새롭게 부상하는 해양모빌리티 및 친환경 연료선박 등 해양신산업과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부산항, 광양항) 핵심 산업 확대</p>	해양산업 클러스터 개발계획변경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 사항
10	항만배후 단지	항만배후단지 단계별 규제완화 추진 (해수부)	<p>기존 항만배후단지에서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재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수부 또는 지자체 허가 필요</p> <p>완화 항만물류분야 단계별 규제완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단계) 공급방식 다변화 * 제4차(23~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22.12.16. 고시) 상 산업단지와 내륙부지도 허용 - (개발·분양단계) 국유재산의 특례기간 확대 * 항만배후단지 내 국유재산의 사용기간 확대(20년→30년, '23.10.24, 항만법 제57조 개정) - (운영단계) 입주자격 완화 *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을 관할 항만에서(입항·출항 하는 선박 이용 수출입 화물의 제조업 영위자로서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기준 충족하는 자)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하여 입주자격 완화('22.12.27, 항만법 제69조 개정) 	항만법 개정 (조치완료)
11	기타	소규모사업은 해역이용 협의·평가 없이 신고로 간소화 (해수부)	<p>기존 소규모 사업이나 사업연장 시에도 협의·평가를 요구, 민간부담 초래(건당 5백만원 이상)</p> <p>완화 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가 작은 사업의 경우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대신 사업계획 등을 포함한 별지서식으로 같음</p>	해양이용영향 평가법 하위법령 제정

□ 산업통상자원부 (9건)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 사항
1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권한 위임 및 경미한 사항 범위 확대 (산업부)	<p>기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개발 계획을 변경</p> <p>완화 토지용도변경 면적, 사업기간, 사업비 등 지자체에서 자체변경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확대</p>	경제자유 구역법 시행령 개정
2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용적률 완화 혜택 적용 (산업부)	<p>기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적게 적용</p> <p>완화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내 산업단지의 용적률 완화 최대한도를 상향(140%→150%)</p>	국가첨단전략 산업법 개정
3	성장관리 권역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내 시설 청산 전에도 타권역으로 시설 이전 및 가동 허용 (산업부)	<p>기존 산업집적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는 500㎡ 이상 공장(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신설·증설·이전을 금지함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업지역을 이전할 때 기존 시설의 전부 청산 전에는 이전 불가</p> <p>완화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공장 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기존 공장의 가동 및 이전할 공장의 부분가동 모두 허용</p>	유권해석 및 행정안내 (조치완료)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 사항
4	복합구역	업종특례지구 지정대상에 복합구역 포함 (산업부)	기존 업종특례지구 지정대상을 산업시설구역으로 한정 완화 업종특례지구 지정대상에 복합구역 포함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 (조치완료)
5	산업단지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등)	첨단융합산업의 산업단지 입지 허용 (산업부)	기존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입주가능 여부가 결정되어 신산업 관련 업체 입지 등에 제한 완화 전문가 참여 위원회 설치를 통해 신산업 기업의 신속한 입주를 지원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 (조치완료)
6 ~ 8	산업시설 구역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제한 개선 (산업부)	기존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등 제한 완화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 제도 신설, 재생사업으로 토지용도 변경 시 개발이익 중복환수 폐지, 연접 기업의 공장 증설 시 나대지 임대 허용 등 개선	산업집적법 개정 (조치완료)
		산업시설구역 내 분할 임대·매각 허용 (산업부)	기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서는 토지 임대차 불허로, 산단 내 잔여부지를 분할해 임대·매각이 불가 완화 기존 입주기업체와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연계된 기업체에 해당 산업용지 임대 허용	산업집적법 개정 (조치완료)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 사항
6 ~ 8	산업시설 구역	산업단지개발 사업의 대행개발 사업자의 경우 공장부지 처분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석 (산업부)	<p>기존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임대사업자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 공공기관이나 민간은행 등 유관 기관에 매각 후 임차하도록 제한</p> <p>* 산단 공사대금을 산단 내 부지로 받아 임대사업자가 된 업체들이 존재</p> <p>완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여 부지를 받은 임대사업자는 처분제한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p> <p>* 최종적인 판단은 관리기관이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p>	유권해석 및 행정안내 (조치완료)
9	전원개발 사업구역	전원개발사업 승인사항 변경 시 신고사항 (경미한 사항) 범위 확대 (산업부)	<p>기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있어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부장관 승인이 원칙이지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이 아닌 신고제 실시</p> <p>완화 전원개발촉진법 운영 매뉴얼 또는 지침서 제정을 통해 법령에서 미열거된 경미한 사항을 신고대상으로 명확화</p>	전원개발촉 진법 운영 매뉴얼 또는 지침서 마련

□ 교육부 (7건)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 사항
1 ~ 7	교육환경 보호구역 (절대보호, 상대보호)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휴양콘도미니엄업 입지 허용 (교육부)	기존 절대보호구역 내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시설 금지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는 지역위원회 심의 후 설치 가능) 완화 관광숙박업 중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금지 시설에서 제외	교육환경법 개정
		대학교 특성을 고려한 금지시설·행위 합리화 (교육부)	기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유충 주점 등 금지 완화 학생 대부분이 성인이며 상대적으로 부지가 넓은 대학교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설정면적 조정 및 업종 규제 완화 등 합리화	교육환경법 개정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및 행위 재검토 (교육부)	기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및 행위 규정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유충주점 등 금지) 완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시설에 대하여 국민들의 위해 인식,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분석하여 금지업종 완화 종합 검토	교육환경법 개정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시기 연장 (교육부)	기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6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의무 완화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허가 신청 전까지 평가서 제출시기 조정	교육환경법 시행령 개정 (조치완료)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 사항
1 ~ 7	교육환경 보호구역 (절대보호, 상대보호)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면제 (교육부)	<p>기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6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의무</p> <p>완화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시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면제</p>	교육환경법 개정
		교육환경평가서 변경사유 발생 시 재작성 기간 연장 (교육부)	<p>기존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한 이후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30일 내에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 필요</p> <p>* ① 선정된 학교 용지 위치 변경, ② 학교용지 면적이 100분의 10이상 증감, ③ 학교용지와 인접한 도로 등 기반시설, 건축물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p> <p>완화 교육환경평가서 재작성 기간 연장(30일→45일)</p>	교육환경법 시행령 개정 (조치완료)
		환경평가 승인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연장 (교육부)	<p>기존 교육감이 통보한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내에 이의신청 가능</p> <p>완화 이의 신청기간 연장(30일→45일)</p>	교육환경법 시행령 개정 (조치완료)

□ 국가유산청 (7건)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 사항
1	역사문화 환경 보존육성 지구, 역사문화 환경 특별보존 지구	심의 생략이 가능한 가설건축물 신축·이축 존치기간 확대 (유산청)	기존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특별보존지구에서 가설 건축물 신축·이축 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 완화 건축법 시행령 상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3년)과 일치화시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2년 → 3년으로 확대	고도육성법 시행령 개정 (조치완료)
2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보호구역 범위 재검토 (유산청)	기존 보호구역의 경우 문화유산법 제27조에 따라 매 10년 마다 보호구역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호구역 불필요 시 이를 조정 완화 다발성, 반복적 민원사항 발생 등의 경우 10년 주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조 정하고, 적정성 검토와 별개라도 필요 시 보호구역 해 제 및 범위 조정 검토 * 문화유산법 제27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주 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호구역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 요 시 조정 가능 - 보호구역은 재산권 행사가 어려울 경우 국가가 관리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토지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완화방안 마련	보호구역 재검토
3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국가유산 인근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유산청)	기존 국가유산 지정 시 그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 일변도로 접근 완화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경관개선사업 시행을 통해 국가유산과 지역사회의 공존 도모 * (24년) 남원읍성, 완도 청해진유적, 태안 안흥진성, 나주읍성, 예천 회룡포 5개 지역	국가유산 경관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 사항
4 ~ 6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디지털규제시스템 도입을 통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 예측성 강화 (유산청)	<p>기존 디지털 시뮬레이션 시스템 부재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가능 여부의 사전검토 어려움</p> <p>완화 디지털규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신청을 3D 모형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D 데이터 시각화, 모델 관리(위치, 높이, 방향 설정 등) 기능개선 추진('24) <p>* 공산성('24.3), 풍납토성('24.4) 지역 건축행위 신청내용을 3D 시범데이터로 구현하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 활용</p>	디지털규제 시스템 기능 추가 구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범위 축소 (유산청)	<p>기존 시도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정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건축행위 등 규제</p> <p>완화 시도 조례의 용도에서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범위 축소(500m→200m)</p>	규제범위 및 강도 재검토·조정(고시)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규제 완화 및 지역 재조정 (유산청)	<p>기존 시도 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정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건축행위 등 규제</p> <p>완화 국가유산 유형별 특성 및 주변여건 등에 맞게 허용기준을 재조정(유산청 허가대상 최소화)하고, 규제완화 지역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 검토(1,692건) 및 규제강도 검토(378건) ** (23년) 부산 구포동 당숲 등 12개 국가유산 규제면적 총 45% 축소 완료(966만㎡→531만㎡, '23.12월) *** (24년) 규제지역 해제예정 40km² (여의도 면적의 13.8배, 2,613km²→2,573k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 화성 등 83개 국가유산 규제면적 총 21% 축소 완료 (9,322만㎡→7,328만㎡, '24.7월 기준) - 부산·인천·경기·경북지역 규제범위 조정 지속 추진 예정('24.12월) 	규제범위 및 강도 재검토·조정(고시)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7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매장유산법 상 협약과 국가유산 영향검토 일원화 (유산청)	<p>기존 국가유산 주변 개발사업 시, 매장유산법에 따른 협약과 문화유산법 등에 따른 영향검토를 거치는 중복규제</p> <p>원회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24.2.14)을 통해 개발예정 지역의 지표조사·매장유산 협약 시 영향검토 동시 실시로 허가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p>	국가유산 영향진단법 제정 (조치완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건)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 사항
1	연구개발 특구 (주거)	(연구개발특구) 준주거구역 내 생활형숙박업 입지 허용 (과기부)	기존 연구개발특구 준주거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입지 불허 완화 국토계획법령과 동일하게 생활숙박시설 입지 조건부 허용	연구개발 특구법 시행령 [별표1] 개정
2	연구개발 특구 (상업)	(연구개발특구) 상업구역 내 생활형숙박 및 일반숙박업 입지 허용 (과기부)	기존 연구개발특구 상업구역 내 생활숙박시설 및 일반숙박 시설 입지 불허 완화 국토계획법령과 동일하게 생활숙박시설, 일반 숙박시설 조건부 입지 허용	연구개발 특구법 시행령 [별표1] 개정
3	연구개발 특구 (주거, 상업, 녹지, 교육·연구 시설, 산업시설)	연구개발특구 관련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 승인권한 위임 (과기부)	기존 특구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이영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특구 개발계획 변경의 경우, 그 승인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 *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 미만 변경, ▲개발사업 시행 기간 단축 또는 1년 미만 연장 등	연구개발 특구법 시행령 개정 (조치완료)
4	연구개발 특구 (녹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구역 건폐율·용적률 확대 (과기부)	기존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교육, 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은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50% 이하로 제한되어 효율적 토지활용에 제약* * (예 : 대덕특구) 840만 평 중 84%가 녹지구역 → 건폐율·용적률이 한계치에 도달하여 연구원 분원 설립 및 기업입탈 다수 발생 완화 특구 내 창업·연구 공간 확충을 위해 녹지지역(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용적률 상향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연구개발 특구법 시행령 개정 (조치완료)
5	연구개발 특구 (교육·연구 시설, 산업시설)	연구개발특구 입지 관련 첨단기술기업 지정 유효기간 연장 (과기부)	기존 첨단기술기업 유효기간(2년)이 타 기업인증 제도에 비해 짧아, 기업의 재지정 부담 존재 완화 첨단기술기업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 * 다른 유사 기업인증제도도 대부분 3년	연구개발 특구법 시행령 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5건)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 사항
1 ~ 2	관광단지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관광단지 설치 허용 (문체부)	<p>기존 관광단지는 총면적 50만㎡ 이상 대규모이면서, 3종류의 필수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지정 가능</p> <p>* (3종 필수시설)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운동·오락 또는 휴양·문화시설</p> <p>완화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 실질적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총면적·필수시설 종류·승인권자 기준을 완화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신설</p> <p>*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 (필수시설) 2종 이상(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승인권자)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사전협의)</p>	관광진흥법 개정 (조치완료)
		관광단지 내 복합시설지구 신설 (문체부)	<p>기존 관광단지 내 설치 가능한 시설을 5개 지구로 나누어 별표를 통해 규정</p> <p>* (설치가능시설 5종)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관광휴양·오락시설, 기타시설</p> <p>완화 목적·용도가 다른 시설을 2개 이상 설치 가능한 복합시설지구 신설을 통해 용·복합 시설* 입지 허용</p> <p>* (예시) ▲주류 판매점 연계 양조장 ▲테마파크 연계 영상 촬영 스튜디오 등</p>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3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사업이 완료된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에 대한 지정해제 및 면적조정 (문체부)	<p>기존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미추진 중인 부지에 대해서도 특구 지정이 존속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 발생</p> <p>완화 신속한 동계특구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통해 사업 완료 또는 미추진 부지에 대한 특구 지정 해제 추진('24.8. 동계특구위원회 구성 완료)</p> <p>- 연내 해제 가능한 2개 지구 4.4km² 해제('24) 추진 중이며, 연내 해제 구역을 포함한 7개 지구 11.96km²(전체 특구의 40%) 면적은 추가사업 소요, 사업추진 경과 등을 검토하여 '25년 하반기까지 단계적 정비*</p> <p>* 특구 구역 내 특구사업자의 요청으로 구역을 정비 하는 경우 비교적 단기간에 심의 및 해제가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구역과 재정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지자체 요청에 의해 정비를 추진하여야 하며, 정비를 위한 용역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25년 정비 용역 수행 후 심의 및 해제 추진</p>	동계특구 위원회 개최 및 특구 지정 해제 심의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 사항
4	문화지구	문화지구 내 권장업종 대상 확대 (문체부)	<p>기존 문화지구 내 권장업종(세제혜택·용자지원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이 '문화시설'과 '전통문화 관련 영업시설'로 규정</p> <p>* (문화시설 ▲공연장 등 공연시설 ▲박물관 등 전시시설 ▲도사시설 ▲지역문화 활동시설 ▲국악원 등 문화보급전수시설 ▲종합시설</p> <p>** (전통문화 관련 영업시설)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필방, 표구점, 도자기점 등</p> <p>완화 악기점, 문화체험형 생활숙박시설, 그밖에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관련된 영업시설도 권장업종으로 지정해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확대</p>	지역문화 진흥법 시행령 개정 (조치완료)
5	대회관련 시설 설치·이용 지역	실효된 대회관련 지역으로 토지이용규제법에서 폐지 (문체부)	<p>기존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고사가 있는 날부터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건축물기설건축물의 허가 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 불가</p> <p>폐지 경기장 건설 추진 완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및 부칙 제2조에 의해 해당 규정은 2019년 3월 31일까지만 유효하므로 삭제</p>	토지이용 규제법 상 별표에서 폐지

□ 행정안전부 (5건)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 사항										
1	소하천 구역	소하천구역 점용료 인상 상한율 규정 (행안부)	<p>기존 소하천구역에서 점용허가를 자가 부담하는 점용료, 그 금액과 징수 방법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되는데 전년 대비 최대 인상 상한율이 없거나 지자체마다 상한율을 달리 규정하는 등의 문제 발생</p> <p>※ 지자체별 점용료 등 산정기준 예시</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자체</th> <th>점용료(토지가격 대비)</th> </tr> </thead> <tbody> <tr> <td>가평군</td> <td>(경작용) 1%, (식물 재식용) 2.5%, (내수면 어업용) 0.75% 등</td> </tr> <tr> <td>달성군</td> <td>(경작용) 1%, (식물 재식용) 2.5%, (내수면 어업용) 0.75% 등</td> </tr> <tr> <td>청주시</td> <td>(경작용) 2.5%, (식물 재식용) 2.5%, (내수면 어업용) 0.75% 등</td> </tr> <tr> <td>예산군</td> <td>(농업용) 15%, (식물 재식용) 5%, (내수면 어업용) 1.5% 등</td> </tr> </tbody> </table> <p>완화 공시지가 상승 시 다소 과도한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국민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하천법 상의 점용료 규정* 등을 참고해 소하천 점용료 인상 상한율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p> <p>* 「하천법」 시행령 제42조 : 하천점용료 인상률을 전년도 점용료의 5%로 제한</p>	지자체	점용료(토지가격 대비)	가평군	(경작용) 1%, (식물 재식용) 2.5%, (내수면 어업용) 0.75% 등	달성군	(경작용) 1%, (식물 재식용) 2.5%, (내수면 어업용) 0.75% 등	청주시	(경작용) 2.5%, (식물 재식용) 2.5%, (내수면 어업용) 0.75% 등	예산군	(농업용) 15%, (식물 재식용) 5%, (내수면 어업용) 1.5% 등	소하천 정비법 개정
지자체	점용료(토지가격 대비)													
가평군	(경작용) 1%, (식물 재식용) 2.5%, (내수면 어업용) 0.75% 등													
달성군	(경작용) 1%, (식물 재식용) 2.5%, (내수면 어업용) 0.75% 등													
청주시	(경작용) 2.5%, (식물 재식용) 2.5%, (내수면 어업용) 0.75% 등													
예산군	(농업용) 15%, (식물 재식용) 5%, (내수면 어업용) 1.5% 등													
2	온천공 보호구역, 온천원 보호지구	지역 여건을 고려한 온천공 보호구역 내 1일 양수량 기준 개선 (행안부)	<p>기존 온천공 보호구역, 온천원 보호지구 내에서는 공공용, 농업용, 1일 양수량 30톤 이내 등을 제외하고 지하수 개발금지</p> <p>완화 온천공 보호구역, 온천원 보호지구이라 하더라도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곳에서는 지하수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1일 양수량 기준 확대</p> <p>※ 상수도가 없는 지역에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1일 양수량 45톤으로 확대(기존 1일 양수량 30톤 이내)</p> <p>- 온천공 보호구역 260개(4km) 및 온천원 보호지구 123개 (149km²)에서 지하수 사용 완화</p>	온천법 시행령 개정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 사항
3	재해위험 개선사업 지구	재해위험 개선사업 지구 내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 완화 (행안부)	<p>기존 사업시행자의 타인 토지에 대한 출입 방해, 공작물의 개축이나 이전 등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p> <p>완화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고, 징역형을 배제하는 등 형벌 규정 합리화</p> <p>* ▲(사업시행자의 토지 출입을 방해한 자,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p>	재해이주 대책법 개정
4	소하천 예정지	사업 미착수로 인한 소하천 예정지 효력 상실기간 단축 (행안부)	<p>기존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이 착수되지 않는 경우 소하천 예정지의 효력을 상실</p> <p>완화 소하천 예정지 지정, 고시 이후 사업이 착수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하는 기간을 2년으로 단축</p> <p>* 다만, 지자체 의견 수렴 필요 → 의견수렴 후, 별도 의견 없을 시 연내 완료</p>	소하천 정비법 개정
5	붕괴위험 지역	붕괴위험지역을 고시할 때 지형도면 공개 (행안부)	<p>기존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을 별도로 고시하지 않아 지자체를 방문해야만 열람 가능</p> <p>완화 붕괴위험지역 지정 시 고시해야 하는 항목에 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을 추가하여 지자체 방문 없이 확인 가능토록 개선</p>	급경사지법 시행규칙 개정 (조치완료)

□ 국방부 (4건)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 사항
1	통제보호 구역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한 통제보호구역 해제·완화 (국방부)	<p>기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지역을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p> <p>완화 통제보호구역 28,005㎡ 해제 및 973,031㎡ 완화 (통제→제한)</p> <p>※ 민통선 복상 및 보호구역 완화 협의시 제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대체시설 등의 국가 양여가 가능하도록 군사기지법 개정('24.2월)</p>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변경·지정 현황 고시 (조치완료)
2	제한보호 구역	제한보호구역 합리적 재설정 (국방부)	<p>기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p> <p>완화 제한보호구역 37,932,236㎡ 해제('23.12) 제한보호구역 338,950,648㎡ 해제('24.2)</p> <p>* '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 이래 역대 최대 연간 보호구역 해제</p> <p>※ 민통선 복상 및 보호구역 완화 협의시 제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대체시설 등의 국가 양여가 가능하도록 군사기지법 개정('24.2월)</p>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변경·지정 현황 고시 (조치완료)
3	제한보호 구역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제한보호구역 완화 (국방부)	<p>기존 접경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국가경제발전 정책에 소외되고, 수도정비법·군사기지법·개발제한구역법 등에 따라 중첩규제</p> <p>완화 국방부와 지자체 간 개별 협의를 통해 적극 조정</p> <p>※ 민통선 복상 및 보호구역 완화 협의시 제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대체시설 등의 국가 양여가 가능하도록 군사기지법 개정('24.2월)</p>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변경·지정 현황 고시 (조치완료)
4	비행안전 구역 (제1구역~제6구역)	작전 여건등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해제 (국방부)	<p>기존 군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해 항공 작전기지 등에 비행안전구역 지정</p> <p>완화 작전성 위배되지 않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해제 (15,785,152㎡)</p>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변경·지정 현황 고시 (조치완료)

□ 중소벤처기업부 (1건)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 사항																		
1	산업기술 단지	산업기술단지 시설요건 등 입지규제 완화 (중기부)	<p>기존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기본기능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및 공간에 관한 제한 규정</p> <p>※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 중 조성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기본기능</th> <th>최종확보 공간·시설</th> </tr> </thead> <tbody> <tr> <td>공동연구</td> <td>500평 이상</td> </tr> <tr> <td>교육훈련</td> <td>200평 이상, 5개 이상</td> </tr> <tr> <td>정보유통</td> <td>독립서버 및 LAN 구축</td> </tr> <tr> <td>창업지원</td> <td>30개 업체 입주 600평 이상</td> </tr> <tr> <td>장비이용</td> <td>실험·측정·연구시설 구축</td> </tr> <tr> <td>시험생산</td> <td>300평 이상</td> </tr> <tr> <td>행정지원</td> <td>지원기관 입주공간 100평이상</td> </tr> <tr> <td>총 면 적</td> <td>3,000평 이상</td> </tr> </tbody> </table> <p>원화 산업기술단지의 기본기능 중 항목 변경*·삭제** 하여 입주자격 완화</p> <p>* '창업지원' → '중소기업 입주지원' 변경 (창업기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p> <p>** 독립서버 구축없이 클라우드 방식 등을 활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유통' 항목 삭제</p>	기본기능	최종확보 공간·시설	공동연구	500평 이상	교육훈련	200평 이상, 5개 이상	정보유통	독립서버 및 LAN 구축	창업지원	30개 업체 입주 600평 이상	장비이용	실험·측정·연구시설 구축	시험생산	300평 이상	행정지원	지원기관 입주공간 100평이상	총 면 적	3,000평 이상	최소 시설요건 완화 등 현황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기본기능	최종확보 공간·시설																					
공동연구	500평 이상																					
교육훈련	200평 이상, 5개 이상																					
정보유통	독립서버 및 LAN 구축																					
창업지원	30개 업체 입주 600평 이상																					
장비이용	실험·측정·연구시설 구축																					
시험생산	300평 이상																					
행정지원	지원기관 입주공간 100평이상																					
총 면 적	3,000평 이상																					

□ 보건복지부(1건)

연번	지역·지구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 사항
1	묘지 등 설치 제한지역	녹지지역, 일반주거·상업· 공업지역 등에 대해 일부 장사 시설 설치 허용 (복지부)	<p>[기존]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의 설치 제한 지역에 대한 시행령 일부 조항이 불분명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규정되어 있어 해당 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혼란 초래</p> <p>[안화] 장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녹지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에 설치 가능한 장사시설* 종류 구체화</p> <p>* ▲ 보전생산녹지(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 ▲ 자연녹지(종교집회장 내 봉안당) ▲ 일반주거·상업·공업지역(종교집회장 내 봉안당)</p>	장사법 시행령 개정